

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416 |
|----------|------|

2021년 07월 02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 안 일 : 2021년 05월 25일
- 다. 회 부 일 : 2021년 06월 01일
- 라. 상 정 일 :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
2021년 6월 18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김상한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 서천연수원은 『지방공무원법 제77조』 및 『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』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교육·연수를 통한 행정 능력향상 및 직원들의 여가·휴양 수요 충족을 위해 운영되는 후생·복지시설로서,
- 2021.12.31.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되어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연수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3. 주요 내용

가. 위탁 사무명 :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 및 시설관리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 :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호
- 필요성 : 연수원은 신입자 교육, 부서세미나, 워크숍 등 교육·연수와 직원들의 휴양·여가 등 후생복지를 위해 민간의 연수원 운영 전문 인력과 노하우 등 적정 능력을 갖춘 업체에 위탁 운영, 관리토록 함으로써
 - 인건비 등 운영비용은 줄이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용직원들의 만족도 제고 및 연수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- 서천연수원 운영 및 부지 내 일체의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
-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방안
- 생활연수 및 단체연수 편의지원 방안 개발 및 운영
- 서천군 지역 교육 및 협력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위치 :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74-87
- 건물면적 : 연면적 18,925m², 지하2층~지상4층, 4개동
- 부지면적 : 97,684m²(대지 : 43,241m², 임야 : 54,443m²)
- 연수시설 : 객실(151실) 대강당, 세미나실, 중·소회의실 등
- 편의시설 : 식당, 매점, 사우나, 야외 수영장, 노래연습실, PC방 등

마. 민간위탁기간 : 2022. 1.1. ~ 2024. 12.31.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3,005백만원 / 연, ※ 재위탁 공고금액('22년 예산편성)
- 산출근거 : 최근 3년 서천연수원 인건비 및 운영비용 결산기준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- 심 의 일 : 2021. 5.17(월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공무원법

▶ 제77조(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▶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▶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

-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

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▶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7.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관한 사무

○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

▶ 제6조(후생복지시설의 운영)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.

1.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·구내식당·매점
2.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·치과진료실·체력단련실
3.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·연수원·콘도 등의 확보 운영

▶ 제10조(운영의 위탁 등)

- ①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.

나. 기타사항

〈 그 간의 위탁경과 〉

- 서천연수원 개원 : '2007. 6. 26
- 최초위탁(1차) : '07.6.1~'10.5.31(수탁업체 : (주)HTC) : 공개경쟁
- 재 위 탁(2차) : '10.6.1~'13.5.31(수탁업체 : (주)HTC) : 공개경쟁
- 재 위 탁(3차) : '13.6.1~'16.5.31(수탁업체 : (주)HTC) : 공개경쟁
- 재 위 탁(4차) : '17.7.1~'18.12.31(수탁업체 : (주)HTC) : 수의계약
※ 재 위탁 공개모집 2회 유찰로 단독 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
- 재 위 탁(5차) : '19.1.1~'21.12.31(수탁업체 : (주)산하에이치엠) : 공개경쟁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가. 동의안 개요

-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서천연수원의 운영 및 시설관리 사무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(2021년12월31일)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하여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서천연수원 현황

- 위 치 :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74-87(월호리621)
- 부지면적 : 97,684㎡(대지 : 43,241㎡, 임야 : 54,443㎡)
- 건물규모 : 연면적 18,925.38㎡, 지하2층~지상4층(4개동)
- 주요시설 : 객실 151실(객실 136실, 단체 연수실 15실)
 - 연수시설 : 대강당, 시청각실, 중강의실, 소강의실 등
 - 식음시설 : 대식당, 카페테리아
 - 편의시설 : 편의점, 키즈카페, 노래연습실, PC방, 북카페, 당구(탁구)장, 사우나, 세탁실, 야외수영장, 족구장
 - 주차대수 : 165대(지상)

- 서천연수원은 개원(2007.6.26.)이후,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.

[서천 및 수안보연수원 민간위탁 현황]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위탁회수 | 수탁업체 | 협약금액 | 수탁기간 | 입찰 방법 | 비 고 |
|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서 천 | (1차) 최초위탁 | (주)HTC | 1,980 | '07.6.1~'10.5.31(3년) | 공개경쟁 | |
| | (2차) 재 위 탁 | (주)HTC | 1,980 | '10.6.1~'13.5.31(3년) | 공개경쟁 | |
| | (3차) 재 위 탁 | (주)HTC | 2,020 | '13.6.1~'16.5.31(3년) | 공개경쟁 | |
| | (4차) 재 위 탁 | (주)HTC | 2,018 | '16.7.1~'18.12.31 (2년6월) | 수의계약 (2회유찰) | 시의회동의 09-1005 ('16.3.9) |

| | | | | | | |
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(5차) 재 위 탁 | (주)산하HM | 2,139 | '19.1.1~'21.12.31(3년) | 공개경쟁 | |
| 수안보 | (1차) 최초위탁 | (주)HTC | 1,890 | '08.6.1~'11.5.31(3년) | 공개경쟁 | |
| | (2차) 재 위 탁 | (주)HTC | 1,970 | '11.6.1~'14.5.31(3년) | 공개경쟁 | |
| | (3차) 재 위 탁 | (주)오브이룸스 | 2,013 | '14.6.1~'17.5.31(3년) | 공개경쟁 | |
| | (4차) 재 위 탁 | (주)오브이룸스 | 2,020 | '17.6.1~'19.12.31(2년 7월) | 공개경쟁 | 시의회동의 09-1472('16.12.16) |
| | (5차) 재 위 탁 | (주)오브이룸스 | 2,236 | '20.1.1~'22.12.31(3년) | 공개경쟁 | |

※ 서천·수안보 위탁기간 3년 이하는 회계·결산연도 일치코자 단축 위탁

- 서울시는 서천연수원외에도 수안보연수원과 속초수련원을 포함 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, 서천연수원과 수안보연수원은 민간위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속초수련원은 직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음.

[속초수련원, 서천연수원, 수안보연수원 운영현황]

| 구 분 | 속 초 | 서 천 | 수안보 |
|-------|---|---|--|
| 위 치 |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160 |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74-87 |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 1길 99 |
| 개원일자 | '97. 3. 15('09 리모델링) | '07. 6. 26 | '08. 7. 11 |
| 객 실 수 | 80실 | 151실(단체용 15실) | 110실(단체용 10실) |
| 운영형태 | 직영 | 민간위탁 | 민간위탁 |
| 건물규모 | 지하2층, 지상8층 (1동) 연면적 7,243㎡ | 지하2층, 지상4층 (4동) 연면적 18,925㎡ | 지하2층, 지상6층 (2동) 연면적 21,731㎡ |
| 부지면적 | 25,936㎡ | 97,684㎡ | 59,815㎡ |
| 교육시설 | 강당 (100석) 세미나실 1 (30석) 세미나실 2 (16석) | 강당 (200석) 중강의실 1 (40석) 중강의실 2 (40석) 시청각실 (40석) 소강의실 1,2,3 (각 10석) | 강당 (150석) 중강의실 1 (65석) 중강의실 2 (138석) 시청각실 (40석) 소강의실 1,2,3,4 (각 10석) |
| 부대시설 | 사우나, 휴게실, 식당, 매점, 노래방, PC방, 테니스장 등 | 사우나, 식당, 수영장, 노래방, 매점, PC방, 당구장, 탁구장 등 | 사우나, 식당, 수영장, 노래방, 매점, PC방, 당구장, 탁구장 등 |

- 서천연수원 민간위탁은 「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3년간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며, 행정국은 2021년 10월경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를 제출받아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거쳐 적격업체를 선정할 계획임.
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11조(협약체결 등)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.
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
위탁 운영 방안

- 위탁근거 : “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” 제6조
- 위탁기간 : 2022. 1. 1 ~ 2024. 12. 31(3년)
- 위탁금액 : 연3,005백만원(충남형 생활임금 적용)
 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회계연도 개시 전 협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 심의결과에 따라 위탁비용 변경
 - ※ 인력개발과에 기 편성된 '21년 예산 중 공공운영비, 사무관리비 등 '22년 예산 편성시 민간위탁(공공운영비, 사무관리비) 포함 산정
 - 입찰 공고금액, 참가업체 제안가격, 계약심사 결과에 의거 최종 결정
- 위탁사무
 - 서천연수원 운영 및 부지 내 일체의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
 -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방안
 - 생활연수 및 단체연수 편의지원 방안 개발 및 운영
 - 서천군 지역 교육 및 협력 등
- 선정방법 및 제안서 평가 : 공개경쟁입찰
 - 공고금액, 계약방법, 모집참가 자격, 낙찰자 결정방법, 협약체결 내용
 - 평가위원 구성방법, 평가항목 및 배점 등 포함
 - 세부 추진절차

```

      graph LR
      A["① 시의회  
동의안  
(’21.6월)"] --> B["② 모집공고  
(’21.9월)"]
      B --> C["③ 모집참가등록  
및  
제안서접수  
(’21.10월)"]
      C --> D["④ 제안서 평가  
및  
적격업체 선정  
(’21.11월)"]
      D --> E["⑤ 계약 및  
협약심사  
(’21.12월)"]
      E --> F["⑥ 협약체결  
(’21.12월)"]
      
```

- 다만, 서천연수원은 연수시설 설치 이후, 계속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고, 한 업체(舊)HTC, 現)산하HM)가 장기수탁(14년 6월)하였는 바,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기간의 적정성, 관리운영 실태 등에 대한 중간점검과 위탁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음.

나. 서천연수원 민간위탁 필요성 및 운영개선 방안 검토

-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·저효율을 개선하거나,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시행되고 있음.
- 반대로 민간위탁은 공적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퇴색시키고 사용료 인상 추진을 통한 이용자부담 증가 및 공적인 사명감 부족 등의 단점 또한 있다고 할 것임.

[민간위탁의 장·단점]

| 장 점 | 단 점 |
|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행정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 · 민간의 경험활용으로 전문성·기술성 제고 · 경영쇄신노력을 통한 공공서비스 질 제고 · 공익성·기업성의 조화로 행정능률 극대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종합적·체계적 사업추진 및 기관간 협조 체제 미흡 · 공익성(공공성) 퇴색 · 무분별한 수익사업 추진 및 적자운영시 수수료(사용료) 인상 추진 등 주민부담 증가 · 장기 위탁시 사명감 부족, 프로그램 개발 저조 · 기계설비의 무리한 작동으로 사용연한 단축 등 시설물 관리 부실화·노후화 촉진 · 노조활동 등 서비스 중단시 주민불편 초래 |

- 행정국은 연수원 운영업무는 민간 전문인력과 운영 노하우가 상호 결합하였을 때 만족도 제고 등 운영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, 인건비 등 운영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 제공, 이용직원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가능 등 민간위탁이 갖는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.

[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]

- 심 의 일 : 2021.05.17.(월)
- 심의결과 : 적정

- 대통령령인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11조제1항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나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등은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바,
 - 서천연수원 운영은 연수훈련 뿐만 아니라 직원과 가족들의 휴양시설로서 호텔 등 숙박시설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측면에서 볼 때, 민간수행이 보다 효율적이며 민간의 전문성·기술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무로 볼 수 있다고 하겠음.

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11조(민간위탁의 기준)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- 다만, 서울시 3개 연수시설의 연도별 이용 만족도 결과를 살펴보면, 직영으로 운영되는 속초수련원의 경우 직원들의 친근성 등으로 인해 일부 만족도가 더 높게 평가되고 있는바, 민간위탁을 할 경우 전문성, 효율성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노력도 요망된다고 하겠음.

[서울시 3개 연수시설 이용 만족도 조사 현황]

| 구 분 | 총 합 만족도 | 속초 | 서천 | 수안보 | 조사기관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|
| '10년도 | 83.6 | 84.9 | 82.4 | 83.5 | 한국능률협회컨설팅 |
| '12년도 | 84.1 | 85.0 | 84.4 | 83.0 | 한국갤럽조사연구소 |
| '16년도 | 82.8 | 84.4 | 80.6 | 83.4 | 한국능률협회컨설팅 |
| '18년도 | 81.3 | 81.0 | 81.1 | 81.7 | 한국갤럽조사연구소 |
| '20년도 | 84.2 | 83.9 | 82.1 | 86.6 | 한국능률협회컨설팅 |

- 특히, 최근 3년간 서울시 3개 연수시설 자체 이용만족도 조사에서도 서천연수원이 3개 연수원의 평균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, 행정국의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.

[최근 3년간 서울시 3개 연수시설 자체 이용 만족도 조사 현황]

○ 3개연수원 평균

(단위 : %)

| 구분 | 평균 | 속초 | 서천 | 수안보 |
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3년 평균 | 95.7 | 95.5% | 94.4% | 96.4% |
| 2018년 | 96.1 | 96.0% | 96.1% | 96.1% |
| 2019년 | 95.6 | 95.0% | 94.3% | 96.4% |
| 2020년 | 94.8 | 94.9% | 88.0% | 97.2% |

○ 공무원수련원(속초)

(단위 : 명 / %)

| 구분 | 모집단 | 답변인원 | 답변율 | 답변내용 | | | | 만족율 |
|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| | | | 매우만족 | 약간만족 | 약간불만 | 매우불만 | |
| '18년 | 24,900 | 2,838 | 11.4% | 1,624 | 1,100 | 97 | 17 | 96.0% |
| '19년 | 17,923 | 2,168 | 12.1% | 1,120 | 939 | 95 | 14 | 95.0% |
| '20년 | 12,457 | 834 | 6.7% | 714 | 78 | 34 | 8 | 94.9% |

○ 서천연수원

(단위 : 명 / %)

| 구분 | 모집단 | 답변인원 | 답변율 | 답변내용 | | | | 만족율 |
|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| | | | 매우만족 | 약간만족 | 약간불만 | 매우불만 | |
| '18년 | 14,153 | 2,235 | 15.8% | 1,773 | 374 | 78 | 10 | 96.1% |
| '19년 | 14,428 | 777 | 5.4% | 567 | 166 | 42 | 2 | 94.3% |
| '20년 | 7,478 | 548 | 7.3% | 321 | 161 | 53 | 13 | 88.0% |

○ 수안보연수원

(단위 : 명 / %)

| 구분 | 모집단 | 답변인원 | 답변율 | 답변내용 | | | | 만족율 |
|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| | | | 매우만족 | 약간만족 | 약간불만 | 매우불만 | |
| '18년 | 15,255 | 3,259 | 21.4% | 2,690 | 442 | 110 | 17 | 96.1% |
| '19년 | 16,753 | 2,923 | 17.4% | 2,434 | 385 | 87 | 17 | 96.4% |
| '20년 | 6,726 | 1,495 | 22.2% | 1,237 | 216 | 39 | 3 | 97.2% |

- 한편, 서울시 연수시설 운영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환경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,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운영규정 변경의 필요성과 함께 연수원의 이용률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.
- 특히, 코로나 19라는 부정적인 환경변화로 인해 객실매출, 상품매출, 식음료 매출, 이용자수 감소 등과 같은 결과지표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바,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부정적 환경에 대응하는 자체 개선방안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[서천 연수원 연도별 손익계산서 추이]

○ 손익계산서(서천연수원)

(단위:백만)

| 과 목 | 2019년 | 2020년 | 2021년 1월말 |
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I .매 출 액 | 2,970 | 2,354 | 170 |
| 객 실 매 출 | 1,945 | 2,001 | 170 |
| 상 품 매 출 | 398 | 186 | 0 |
| 식 음 료 매 출 | 616 | 161 | 0 |
| 기 타 매 출 | 12 | 6 | 0 |
| II .매 출 원 가 | 498 | 188 | 0 |
| III .매 출 총 이 익 | 2,472 | 2,166 | 170 |
| IV .운 영 관 리 비 | 2,510 | 2,091 | 160 |
| V .영 업 이 익 | - 39 | 73 | 10 |

[출처 : 「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-서천연수원-」, 21페이지]

- 둘째, 서천연수원은 2020년 민간위탁 지도점검결과, 총 15건이 지적되었으며, 이중 13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나, 지적사항 중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음식폐기물 처리개선 사항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(참고자료).

〔2020년도 민간위탁 연수원(서천수안보) 지도점검 결과보고〕

| 구 분 | 서 천 | 수안보 |
|------|---|---|
| 지적사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당의 벽체 등 청결상태 및 접시 그릇 수납 상태 미흡 ○ 식자재 유통기한 표시 미 부착 ○ 회계 및 기타서류 보관상태 미흡 ○ 대강당 무대 청결 및 악성상태 미흡 ○ 하늘관 야외 자재 정리정돈 미흡 ○ 다산관 사우나 앞 계단 및 창의관 야외 계단 안전 보호조치 미흡 ○ 남자사우나 거울 반사코팅 벗겨짐 ○ 키즈카페 벽체 패널 벗겨짐 ○ 객실 내 스프링클러 덮개 및 환기구 탈락 등 ○ 창의관 지하 1층 피난유도등 부점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강당 무대 청결 및 악성상태 미흡 ○ PC방 벽체 시트 벗겨짐 ○ 노래방 바닥 물딩 들뜸 및 시트지 벗겨짐 ○ 숲솔관 514호 욕실타일 파손 및 315호 스프링클러 덮개 탈락 ○ 중강의실 인테리어 패널 오염 및 탈락 ○ 식당 조리기구(숟) 청결(부식)상태 미흡 ○ 창의관 소회의실 시건장치 불량 |

- 또한, 계속적 민간위탁으로 운영 할 경우, 행정국은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등 위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14조(지휘·감독)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16조(처리 상황의 감사)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,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6. 토론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 (재석위원 9명, 전원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416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1년 5월 25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 서천연수원은 『지방공무원법 제77조』 및 『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』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교육·연수를 통한 행정 능력향상 및 직원들의 여가·휴양 수요 충족을 위해 운영되는 후생·복지시설로서,
- 나. 2021.12.31.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되어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연수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 사무명 :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 및 시설관리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- 추진근거 :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호
 - 필 요 성 : 연수원은 신입자 교육, 부서세미나, 워크숍 등 교육·연수와 직원들의 휴양·여가 등 후생복지를 위해 민간의 연수원 운영 전문 인력과 노하우 등 적정 능력을 갖춘 업체에 위탁 운영, 관리토록 함으로써

- 인건비 등 운영비용은 줄이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용직원들의 만족도 제고 및 연수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- 서천연수원 운영 및 부지 내 일체의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
- 연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이용고객 만족도 향상방안
- 생활연수 및 단체연수 편의지원 방안 개발 및 운영
- 서천군 지역 교육 및 협력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위 치 :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74-87
- 건물면적 : 연면적 18,925m², 지하2층~지상4층, 4개동
- 부지면적 : 97,684m²(대지 : 43,241m², 임야 : 54,443m²)
- 연수시설 : 객실(151실) 대강당, 세미나실, 중·소회의실 등
- 편의시설 : 식당, 매점, 사우나, 야외 수영장, 노래연습실, PC방 등

마. 민간위탁기간 : 2022. 1.1. ~ 2024. 12.31.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재위탁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3,005백만원 / 연, ※ 재위탁 공고금액('22년 예산편성)
- 산출근거 : 최근 3년 서천연수원 인건비 및 운영비용 결산기준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- 심 의 일 : 2021. 5.17(월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지방공무원법

▶ 제77조(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전·휴양·안전·후생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▶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▶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

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▶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7.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관한 사무

○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

▶ 제6조(후생복지시설의 운영)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.

1.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·구내식당·매점
2.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·치과진료실·체력단련실
3.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·연수원·콘도 등의 확보 운영

▶ 제10조(운영의 위탁 등)

- ①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.

나. 기타사항

〈 그 간의 위탁경과 〉

- 서천연수원 개원 : '2007. 6. 26
- 최초위탁(1차) : '07.6.1~'10.5.31(수탁업체 : (주)HTC) : 공개경쟁
- 재 위 탁(2차) : '10.6.1~'13.5.31(수탁업체 : (주)HTC) : 공개경쟁
- 재 위 탁(3차) : '13.6.1~'16.5.31(수탁업체 : (주)HTC) : 공개경쟁
- 재 위 탁(4차) : '17.7.1~'18.12.31(수탁업체 : (주)HTC) : 수의계약
※ 재 위탁 공개모집 2회 유찰로 단독 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
- 재 위 탁(5차) : '19.1.1~'21.12.31(수탁업체 : (주)산하에이치엠) : 공개경쟁

※ 작성자 : 인력개발과 후생팀 김형태 (☎ 2133-5783)